

의안번호	2200998
의 퇴 인	권영세의원
회 답 일	2024.08.14.
추계번호	24D1338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의10 신설(방재도로의 지정 및 운영 등)	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 ¹⁾ 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및 제40조제1항 ²⁾ 에 따른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별·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여야 함	의무규정
		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및 보수·유지관리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고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4조의10 신설(방재도로의 지정 및 운영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
- 1) 제27조(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2) 제40조(대피명령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·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.

2. 상세 사유

□ 방재도로의 지정 및 운영 등(안 제34조의10 신설)

-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재도로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 설치, 노면표시,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및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도로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을 방재도로로 지정하는 경우, 재난 발생 시 방재도로로 사용되는 구간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, 노면표시 등이 필요
 - － 기존의 도로유지·보수 시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의 교체가 가능하나 방재도로 지정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다만, 방재도로의 지정 및 지정취소, 방재도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, 개정안에 따라 지정될 방재도로 개소수 및 연장(km), 교통표지판 및 노면 표시 설치 수량,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특정관리대상지역은 2023년 현재 지정된 곳이 없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2022년 말 기준 17,483개소
 - －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 기관 간 방재도로 지정의 필요성, 해외사례 분석, 법제화 등에 대하여 실무적 논의와 연구³⁾가 계속되고 있으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
 - － 2022년에는 재난 대비 방재도로 선정과 대피로 운영·관리 기술개발, 방사능재난 대피모의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「도시단위 대규모 재난대피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」에 11억원 집행

3) 국민안전처·한국교통연구원(2016), 「재난도로 지정 및 활용방안 연구」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